

## 도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긴급점검 결과

유정원\*

### Summary

#### □ 사회복지시설 대상 긴급조사 실시

- 조사대상 및 시기 : 도내 시설 158개소, 2014. 5. 7 ~ 14.
- 조사방법 : 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안전관리 설문조사  
② 사회복지시설평가 안전관리영역 평가결과 분석

#### □ 안전관리 조사 내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 발간 매뉴얼 비치 및 활용여부 : 보급률 낮고 활용도 미비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유무현황 : 없음
- 시설 상황별 대비 행동요령 및 체크리스트 : 없음
- 안전사고 초기대응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 거의 교육으로 대체
- 시설평가 항목 중 안전점검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

#### □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관리 대응 방안

- 안전점검 이행여부에 따른 행정조치 강화
- 모의훈련 규정 마련 및 시설 간접체험 프로그램 실시
- 경기도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피난기구 확충 및 기능보강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voiced@ggwf.or.kr](mailto:voiced@ggwf.or.kr)/031-267-9363

## I. 보건복지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도내 시설 점검 결과

### □ 중앙정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 현황

#### ○ 보건복지부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 2012년 발간, 72page 책자
- 『장애인을 위한 피난 매뉴얼』 : 2013년 발간, 보행장애인 대상

#### ○ 사회복지시설 평가

-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안전관리 항목 평가 : 표는 점검표 일부

시설안전실태 일일 점검표

점검대상	점검내용	결과 (이상 유, 무)
(건축분야)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	1. 주요 구조부의 이상여부 (벽, 기둥, 바닥, 보, 주계단 등)	
	2.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거실, 통로 등의 내장재료)	
	3. 방화구획의 적정여부 (층별, 면적별, 용도별-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	
	4. (특별) 피난계단의 적정여부(직통계단의 설치, 계단의 구조, 복도 및 통로의 상태, 출구의 상태)	
	5. 커튼, 카페트이 방염처리 여부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1. 조직 및 교육훈련의 적정여부 (안전 및 방화관리 책임자의 선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교육의 실시 등)	
	2. 시설점검, 정비 및 기록유지의 적정여부 (점검의 실시, 정비의 이행, 기록부 배치상태 등)	
	3. 발화원, 인화물 관리의 적정여부 (깍연관리, 청결, 정돈, 폐기물, 쓰레기관리 등)	
	4. 경비순찰의 적정여부(근무자의 배치, 순찰주기의 이행, 비상연락망의 유지 등)	
(일반시설) 발화위험	1. 화기사용물의 적정여부(난방시설, 취사시설, 굴뚝 시설, 환기시설 유지관리 등)	
	2. 가연성 가스시설의 적정여부 (LPG, LNG,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등)	
이 하 생 략		

-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련 점검표가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임.

##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긴급 점검 현황

### ○ 실태조사 대상 및 기간 : 도내 사회복지시설 158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6개소
- 2014년 5월 7일~14일

### ○ 조사 내용 및 결과

#### - 보건복지부 매뉴얼 구비여부와 활용도<sup>1)</sup>

-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과 「장애인을 위한 피난 매뉴얼」 있으나 보급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형식적이어서 활용도 낮음.  
: 내용이 보행가능 장애인을 위한 안내 중심, 중증장애인 시설 등 이동취약자 시설에 실효성 약함.

#### - 사회복지시설평가 안전관리지표 중 안전점검표로 확인가능 한 내용<sup>2)</sup>

- 시설에 비치한 안전점검표는 분기별로 시·군에서 발송하는 안전점검표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은 평가할 수 없음.  
: 안전관련 각종 보험가입 여부, 안전점검 시행여부, 법적 면적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그침.
- 시설 공통 안전관리지표(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주요 10 항목) 분석결과

구분	내 용	결과
보일러 시설	연 1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에 보일러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91.8%
가스시설	매년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93.7%
전기시설	3년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94.3%
소방시설	매년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91.1%
화재보험 상해보험	매년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94.9%
자격증 보유	최근 3년 동안 안전관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2급(전기, 보일러, 가스, 방화관리, 승강기의 5종에 한함)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격자를 채용	91.8%
자격증 직원교육	최근 3년 동안 안전관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⑥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과 다른 분야의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1개 이상 이수	58.2%
자체점검 및 시정조치	최소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89.2%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	93.7%
응급 조치반	매년 자체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	93.7%

1)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설문지를 활용, 조사한 내용.

2)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시설 안전관리 내용 분석결과.

---

## II.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기존 발간된 매뉴얼의 실효성 부족
- 아동·노인·장애인 등 시설 유형별 재난 및 안전사고 행동요령 및 구체적 매뉴얼 부재
  - 지적장애이용 교육자료(그림, 사진, 동영상) 활용 가능성 높음
  -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지체) 특성을 반영한 대처법 등 위기관리 매뉴얼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의 안전관리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침
- 모의훈련이 권고사항이며 교육으로 대체되거나 실시 횟수가 적어서 실제 훈련의 효과성 없음
  - 재난 시 이동, 의료적 돌봄, 의사소통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 부재

## III.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 안전점검 실시 강화

- 2014년 현재 경기도 생활시설·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 시·군 합동점검 및 자체계획 수립 점검과 하절기 대비 점검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시설 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직접점검을 실시, 반드시 결과 보고를 받고 미 이행 시 특별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등 행정적 강력조치 필요
- 시설 자체 모의훈련 횟수를 연1회에서 최소 연3회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 랜덤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피훈련 강화 필요

### 모의 훈련규정 마련 및 재난 간접체험 프로그램 실시

- 전문기관(소방서, 응급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훈련과 화재

---

간접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 등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함.

- 실제 출동하게 되는 전문가(소방관, 의료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상황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의사소통 유지 등 협력방안 강구
- 권고사항은 전문성과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시·군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점검·훈련한다는 법적규정을 두고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시설평가 영역에 연 1회 자체모의 훈련 횟수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실시여부 등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

#### □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행동요령 및 재난·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보급

- 조사결과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시에 직접 활용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별 안전행동 요령을, 매뉴얼 등을 개발 배포에 현장의 절대적 욕구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생활재활교사, 실무자 등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매뉴얼 제작 필요
- 특히, 아동·장애인·노인 등 이동취약자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숙지하기 쉬운 형태로 눈에 띄는 곳에 비치 해야 함.

#### □ 피난기구 확충 및 기능보강

- 장기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이동취약자 거주시설에는 피난 미끄럼틀 및 방화벽 구축, 외부엘리베이터 등 대피용 기구 설치 등 보완 필요